

유해물질의 함유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전기·전자제품

| 종류                  | 함유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납                |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<br>0.1% 이하  |
| 나. 수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육가크롬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폴리브롬화비페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바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.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. 디부틸프탈레이트(DBP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.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(DIBP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차. 카드뮴              |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<br>0.01% 이하 |

2. 자동차

| 종류      | 함유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납    |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<br>0.1% 이하  |
| 나. 수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육가크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카드뮴  |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<br>0.01% 이하 |

비고

"동일물질"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·압착·파쇄·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, 세라믹, 유리, 금속, 합금, 종이,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.